

## 1. 개정이유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3278호, 2016. 9. 28. 공포·시행)에서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의무적 고발대상의 범위를 200만원 이상 횡령에서 100만원 이상 횡령으로 조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 호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훈  
령안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20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20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고발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뇌물수수, 횡령,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, 특히 위원장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200만원</u> 이상 횡령, 뇌물수수의 경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200만원</u> 이상의 공금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3조(고발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<u>100만원</u>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<u>100만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